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3. 18 선고 2021가단9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임경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진

변 론 종 결 2022. 2. 11.

판 결 선 고 2022.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2020. 11. 3. 접수 제11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83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7. “C은 D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751,781원과 그 중 65,796,779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사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1.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E의 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6. 4.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인 E, 피고, H, I, J, K이 있었다. 피고 등 상속인들은 2020. 10. 23.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접수 제11626호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지분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의분할은 그 실질이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을 홀로 부양하여 왔고 망인의 배우자인 G의 요양병원비를 부담하여 오고 있었으며, 피고 외 다른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모두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상속인인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게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2/15 지분 외에는 다른 부동산은 없었던 사실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미추홀구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협의분할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비록 이 사건 협의분할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된다.

1)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이 89세인 2016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 G와도 2006.경부터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여 왔는데, 부모를 모셔온 장남이 상속인들과 협의 하에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관계에서 드물지 않다.

2) 망인이 사망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배우자인 G가 생존하고 있었고, 피고가 G를 부양하며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이 노모인 G를 부양하며 병원비를 지출하는 피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C의 상속분이 시골 소재 대지 652㎡의 2/15지분에 불과하여 가액이 특별히 거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C의 채무관계를 알았다면 C으로 하여금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협의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의 채무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목록(부동산의 표시)

전라남도 장흥군 대 652㎡

